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9월 4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 상 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년 08월 22일 (목)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2013년 08월 27일 (화)

4. 관련근거

가. 「주차장법」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5. 개정이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우선주차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이용 요금 부과 단위를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며,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확보 및 요금 감면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6. 주요 개정내용

- 가. 기 시행중인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안 제21조의4 및 별표3)
- 나.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10분에서 5분으로 조정(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 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률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의 비고 제4호)
- 라. 승용차공동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과 주차요금 50퍼센트 할인 조문 신설(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의 비고 제22호)
- 마.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제명 및 내용 변경

7.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요금의 부과 단위를 변경하여 주민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과 주차요금 할인 조문을 신설하며, 기타 상위법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0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안 제21조의4를 신설하여 기 시행중인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주차요금 부과단위를 현행 10분에서 5분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안 제4호에서는 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률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였음.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안 제7호 나목의 제11호를 제12호로, 제12호를 제13호로, 제14호를 제15호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다목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18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22호에서는 승용차 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면 제공과 50퍼센트 범위내에서 할인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과 서울시 조례를 반영하는 등 주민의 부담경감과 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조례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여성우선주차장 관련 사항은 20개 자치구, 5분제 요금은 15개 자치구,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관련 사항은 12개 자치구가 개정을 했거나 입법 예고 중이며, 주차요금 조정률은 60%인 강북구를 포함하여 12개 구가 50%이상으로 개정을 했거나 입법 예고 중임.

※ 자치구 조례 개정 현황 (입법예고 포함)

5분제 요금	승용차 공동이용	여성우선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비고
15개	12개	20개	13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21조의4(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p> <p>③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p>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p>

현행		개정안																																																																																																																							
<p>[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4">노상주차장</th> <th colspan="3">노외주차장</th> </tr> <tr> <th rowspan="2">1회주차시 10분당</th> <th rowspan="2">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th> <th colspan="2">월정기권</th> <th rowspan="2">1회주차시 10분당</th> <th colspan="2">월정기권</th> </tr> <tr> <th>주간</th> <th>야간</th> <th>주간</th> <th>야간</th> </tr> </thead> <tbody> <tr> <td>1급지</td> <td>1,000</td> <td>5,000</td> <td>-</td> <td>-</td> <td>800</td> <td>250,000</td> <td>100,000</td> </tr> <tr> <td>2급지</td> <td>500</td> <td>4,000</td> <td>150,000</td> <td>60,000</td> <td>500</td> <td>180,000</td> <td>60,000</td> </tr> <tr> <td>3급지</td> <td>300</td> <td>3,000</td> <td>100,000</td> <td>40,000</td> <td>400</td> <td>100,000</td> <td>40,000</td> </tr> <tr> <td>4급지</td> <td>200</td> <td>2,000</td> <td>50,000</td> <td>20,000</td> <td>300</td> <td>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td> <td>20,000</td> </tr> <tr> <td>5급지</td> <td>100</td> <td>1,000</td> <td>30,000</td> <td>20,000</td> <td>200</td> <td>30,000</td> <td>20,000</td> </tr> </tbody> </table> <p>- 비교 -</p> <p>1. ~ 2.(생략)</p> <p>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p> <p>신촌지역 : 경의선철도·경의선철도와 대흥로를 잇는 도로·대흥로·용산선철도·양화로 및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p>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시 10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주차시 10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1,000	5,000	-	-	800	250,000	100,000	2급지	500	4,000	150,000	60,000	500	180,000	60,000	3급지	300	3,000	100,000	40,000	400	100,000	40,000	4급지	200	2,000	50,000	20,000	3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200	30,000	20,000	<p>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 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p> <p>[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4">노상주차장</th> <th colspan="3">노외주차장</th> </tr> <tr> <th rowspan="2">1회주차시 5분당</th> <th rowspan="2">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th> <th colspan="2">월정기권</th> <th rowspan="2">1회주차시 5분당</th> <th colspan="2">월정기권</th> </tr> <tr> <th>주간</th> <th>야간</th> <th>주간</th> <th>야간</th> </tr> </thead> <tbody> <tr> <td>1급지</td> <td>500</td> <td>5,000</td> <td>-</td> <td>-</td> <td>400</td> <td>250,000</td> <td>100,000</td> </tr> <tr> <td>2급지</td> <td>250</td> <td>4,000</td> <td>150,000</td> <td>60,000</td> <td>250</td> <td>180,000</td> <td>60,000</td> </tr> <tr> <td>3급지</td> <td>150</td> <td>3,000</td> <td>100,000</td> <td>40,000</td> <td>200</td> <td>100,000</td> <td>40,000</td> </tr> <tr> <td>4급지</td> <td>100</td> <td>2,000</td> <td>50,000</td> <td>20,000</td> <td>150</td> <td>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td> <td>20,000</td> </tr> <tr> <td>5급지</td> <td>50</td> <td>1,000</td> <td>30,000</td> <td>20,000</td> <td>100</td> <td>30,000</td> <td>20,000</td> </tr> </tbody> </table> <p>- 비교 -</p> <p>1. ~ 2.(현행과 같음)</p> <p>3. -----.</p> <p>가. 1급지 : ----- ----- -----</p> <p>1)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이화여대길·대흥로·구 용산선철도·양화로·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p>2) 용산·마포지역 : 강변북로·마포대로·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p>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150,000	60,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00,000	40,000	20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20,000	15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시 10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주차시 10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1,000	5,000	-	-	800	250,000	100,000																																																																																																																		
2급지	500	4,000	150,000	60,000	500	180,000	60,000																																																																																																																		
3급지	300	3,000	100,000	40,000	400	100,000	40,000																																																																																																																		
4급지	200	2,000	50,000	20,000	3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200	30,000	20,000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150,000	60,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00,000	40,000	20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20,000	15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현 행	개정안
<p>나. ~ 바. (생략)</p> <p>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u>30% 범위 안에서</u> 조정할 수 있다.</p> <p>5. ~ 6. (생략)</p> <p>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 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p> <p>가. (생략)</p> <p>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p> <p>다.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u>」제2조에 따른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u>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p>	<p>나. ~ 바. (현행과 같음)</p> <p>4. ----- ----- ----- ----- ----- <u>50퍼센트 범위에서</u> ----- -----.</p> <p>5. ~ 6. (현행과 같음)</p> <p>7. ----- -----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u>제12호·제13호·제15호</u>----- ----- ----- -----</p> <p>다.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u>고엽제 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u>로서 <u>국가보훈처장이</u> ----- -----</p>

현행	개정안
	<p>- 비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 5.1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관계 법령

■ 주차장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7.1.] [법률 제11817호, 2013.5.22., 일부개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11. (생략)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생략)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18. (생략)

②~⑥ (생략)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 2013.5.16.] [서울특별시조례 제5488호, 2013.5.16., 일부개정]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목 개정 2012.11.1)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개정 2012.11.1)

-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신설 2012.11.1)
- ③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 ④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8]